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안년월일 : 2011. 4. 5  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형유통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등록 제한과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적합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,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함. (안 제7조 제3항)

나.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“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”로 하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제7호를 “수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”로, 제8호를 “시민단체 관계자”로, 제9호를 “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”로 각각 신설함. (안 제8조 제2항, 제3항)

다. “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”를 “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”로 함. (안 제9조 제1항)

라. “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 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.”를 신설함. (안 제10조 제2항)

마. “조건”을 “조건(판매품목의 제한, 영업시간의 조정,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)”으로 함. (안 제15조 제1항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 
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6조 제1항 중 “있도록 추진계획”을 “있도록 매년 추진계획”으로  
한다.

안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,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  
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”로 신설한다.

안 제8조 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 
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제7호부터 제9호까지  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
7. 수퍼마켓,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
8. 시민단체 관계자
9.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

안 제9조 제1항 중 “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”를 “위원장이 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/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 
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- ②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 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.

안 제15조 제1항 중 “조건”을 “조건(판매품목의 제한, 영업시간의 조정,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)”으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원 안   | 수 정 안   |
|---|---|
| <p><b>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</b></p> <p>제6조(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마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7조(상생발전의 실태조사) ①~② (생략)</p> <p>1.~ 4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8조(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마포구 안의 전통시장, 수퍼마켓,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</u></p> <p>3.~6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7. (생략)</p> | <p><b>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</b></p> <p>제6조(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있도록 매년 추진계획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~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상생발전의 실태조사) ①~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1.~4.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,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15명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<u>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</u></p> <p>3.~ 6. (원안과 같음)</p> <p>7. 수퍼마켓,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</p> <p>8. 시민단체 관계자</p> <p>9.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</p> <p>10. (원안과 같음)</p> |

| 원 안   | 수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9조(회의 등) ① <u>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협회의 업무) 협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.</p> <p>1.~10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15조(조건 등의 부과)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마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회의 협의를 거쳐 <u>조건, 기한, 철회유보, 부담(이하 “조건 등”이라 한다)을 붙일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9조(회의 등) ① -----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협회의 업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 10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 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.</p> <p>제15조(조건 등의 부과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조건(판매품목의 제한, 영업시간의 조정,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)</u>-----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|